생태여성주의와 환경법질서

석 인 선*

《 차 례 》

Ⅰ. 환경문제와 제3세계 여성
Ⅱ. 환경문제와 여성주의
Ⅲ. 환경법질서에 대한 여성주의관점에서의 비판
Ⅳ. 지역성을 반영한 생태여성주의에 입각한 환경법질서의 모색
Ⅴ. 맺음말

Ⅰ. 환경문제와 제3세계 여성

21세기를 흔히 환경의 세기라고 한다. 20세기는 19세기 열강들의 패권주의로 인한 공간지배의 정당성이 붕괴되면서 국가마다 부를 추구하는 경제의 세기였다. 경제발전이 일정부분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 것은 인정하나 그 정도가 지나침에 따라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세기는 동서의 갈등 대신 환경문제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1)]

1980년대에는 '성장의 한계'가 자원고갈과 식량부족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시각에서 볼 때에는 견해가 다르다. 오늘날 '한계'를 제공하는 것은 성장의 '외부재들'(특히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다. 소비유형은 북쪽에서의 유효수요에 의해 추동되지만, 기후변동과 생물다양성의 감소의 형태로 나타나는 자원소비 증가의 결과는 지구 전역에서 감지되고 있다. 또한 북쪽의 '환경적' 의제와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공유하고 있는 '발전'의 의제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2)] 1992년 7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여성환경연대(편),「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21세기의 여성과 환경」, 박영률출판사, 2001, 19면.

2) 마이클 레드클리프트·테드 벤튼(편), 이기홍 외(역),「지구환경과 사회이론」, 한울 아카데미,

월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이러한 차이를 뚜렷이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발전에 따른 환경악화의 영향은 자연에 대한 문제에 그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그리고 평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인간사회의 구조 및 생물로서의 인간의 성질을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와 생물학적 약자인 인간집단에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환경파괴의 책임도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3]

실질적으로 생태학적 측면에서 전지구적 생태위기는 생산, 재생산, 그리고 세계관 등 모든 사회 수준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4] 생태와 생산과의 관계는 전지구적 생태위기를 구성하는 첫 번째 모순을 유발한다. 인간의 생산체계는 모든 생태적 과정을 통합하고 있는 생지화학적 순환과 에너지 교환을 통해 자연에 대한 압박을 점차 강화시키고 있다. 고갈과 오염이 가속화되면서, 이는 자연의 복원력을 넘어서게 되고, 인간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자연의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하지만 생산체계는 대부분의 제3세계와 토착문화의 경우에서처럼 기본적 생계를 지향하거나, 아니면 제1세계 자본주의 경제와 그에 의존적인 제3세계 식민경제에서처럼 시장교환을 지향할 수 있다. 결국 서로 다른 생산체계들은 서로 다른 경제발전 양상들에서 비롯되는 서로 다른 생태적 영향을 가져온다.[5]

현실적으로 개발도상국의 환경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이해와 총체적인 발전 이론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매우 넓으며, 또한 환경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과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가능한 정책들을 수행하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 역시 매우 넓다.[6] 현재의 발전정책은 개발도상국에서 자원고갈을 수반한 환경문제를 악화시킨다.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발전적 모델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기존 공업국가들이 이를 권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선택은 기대와 수요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결국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능력을 제약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이며, 제약의 많은 부분은 선진국들의 수요구조와 선진국들과 저발전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연유한다. 이는 특히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많은 수단들에서 사실로 드러난다.[7] 재난방제, 기근, 계절에 의한 주기성, 여성 등과 같은 각 영

1997, 30면.

3) 안정선, "지속가능한 사회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일 고찰", 「공주문화대학논문집」 제26호, 1999.10, 327-328면.

4) 캐롤린 머천트, 허남혁(역), 「래디컬 에콜로지」, 이후, 2001, 48면.

5) 앞의 책, 48-49면.

6) 마이클 레드클리프트, 강현수·이상헌·장윤희(역), 「발전과 환경위기: 새로운 환경이념의 모색」, 한울, 1993, 41면.

7) Global 2000, *Report to the President*, Harmondsworth: Penguin, 1982, p.229.

역에서 현재의 자원이용은 사회에 각각 상이한 영향을 초래한다. 종종 단순히 '자연적 힘'으로 인식되고 있는 환경이 사회관계와 사람들의 생활기회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쪽 사람들과 북쪽과 유사한 소비습관에 익숙해진 소수 남쪽 사람들의 소비수요를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자본축적의 추동력으로 인하여 자원의 고갈과 쓰레기발생이라는 두 측면에서 값비싼 대가가 강요되고 있다. '발전'은 자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경제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유지된다. 따라서 경제체계가 비대해지면 질수록 더 많은 것을 파괴하고, 또 경제체제를 단지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이 생산되어야만 한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자원보존보다 자원사용에 편향되어 있다.[8]

이러한 인식과 함께 환경위기, 빈곤, 성차별의 심화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수익과 고통의 구조적 불평등에 둔감한 환경이념으로는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없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9] 이러한 전반적인 논의를 전제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을 자연과 환경의 개발과정에서 제외시킨 의사결정구조에서 여성의 눈으로 환경문제를 보며 자연과 여성에 대한 지배적 힘의 재편을 통한 관계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인식적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10]

제3세계 여성들은 식민지적 주변부화와 생태적으로 지속불가능한 개발프로젝트에서 비롯하는 환경위기를 최일선에서 고스란히 겪고 있다. 생계농업을 위한 농민, 도시노동자, 혹은 중산층 전문가로서, 기본적 생계와 건강한 생활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은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제3세계 여성들은 이러한 위협에 직면하여 무력한 존재로 남아있지는 않는다. 이들은 많은 경우 자신과 아이들의 삶, 그리고 지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일부는 자신들을 여성론자로 간주하고 일부는 생태여성론을 포용하겠지만, 대부분은 주로 생존을 위한 조건에 관심을 두고 있을 것이다.[11] 이와 같이 제3세계 여성들은 환경보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식민주의와 산업자본주의가 환경과 자신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드러내 보여준다. 또한 숲과 물보전을 통해 생명 부양계를 유지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되살리며, 생태적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리더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기여가 아직 정부와 보전단체들에서 합당한 인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서서히 생태여성주의의 목표인 여성과 자연의 해방을 성취해 나가고 있다.[12]

---

8) 마이클 레드클리프트, 앞의 책, 각주 6), 43면.
9) 로빈 애트필트, 구승희(역), 『환경윤리학의 제문제』, 따님, 1991, 66면.
10) 마이클 레드클리프트·테드 벤튼, 앞의 책, 각주 2), 167면.
11) 캐롤린 머천트, 앞의 책, 각주 4), 269면.
12) 앞의 책, 276면.

생태여성주의[13]적 행동은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모순을 건드린다. 여성들은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생물학적이며 사회적인 재생산에 대한 생산의 공격을 뒤집고자한 다. 핵발전소 사고에서 나오는 방사능, 독성 화학물질, 유해 폐기물 등이 인류의 생물학적 재생산을 위협하는 이때, 여성들은 자신들의 육체와 아이들에 대한 공격으로써 이러한 모순을 경험하고, 이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 가정용 제품, 산업 오염물질,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 등이 제1세계 여성들의 가정으로 침입하면서 일상생활의 재생산을 위협하고 있는 반면, 많은 제3세계 여성들은 환금작물재배와 농기업에서 사용하는 농약 때문에 식량, 연료, 깨끗한 식수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공격에 대해 제1세계 여성들은 소비습관 개선, 쓰레기 재활용, 생산 및 폐기방식에 대한 항의 등을 통해 싸우고 있는 반면, 제3세계 여성들은 전통적 생활방식을 보호하고 다국적 기업과 채취산업에서 발생하는 생태적 피해를 뒤집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 여성들은 주류 사회가 사회화와 정치를 통해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방식에 대해, 대안적인 젠더 역할, 고용조건, 정치적 실천 등을 구상하고 이를 행동에 옮기면서 이에 도전하고 있다.[14]

제3세계에서 여성과 환경문제는 개발문제와 더욱 밀접한 관련 속에서 논의된다. 환경파괴적인 서구식 개발방식은 열대우림 등 제3세계의 풍부한 생태적 자산을 급속도로 고갈시켰으며, 그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생태계에 적합하게 형성되어 왔던 경제체계를 서구 생산체계로 대체하고, 매우 생태계 파괴적인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고소득과 효율성을 약속했던 이러한 구조재조정사업은 농산물의 국제가격 폭락, 지속불가능한 서구식 화학농법과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로 인한 환경파괴 등에 의해 제3세계 국가에 눈덩이처럼 불러나는 부채만 안겨주고, 전통적 사회질서 및 가치체계, 성역할 분담체계를 붕괴시켰으며, 갈수록 심화되는 환경문제를 남겼다. 서구따라잡기를 목표로 출발한 제3세계 국가의 경제개발과정이 야기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제반문제를 가장 먼저 인식한 집단 중의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일차적으로 흡수된 남성과 달리 자연과 밀착된 생계유지 방식을 전담하고 있던 제3세계의 여성이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개발원조 현장에서 일했던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이러한 방식의 개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

13)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이라는 단어는 지구상에서 인간의 생존을 보장해 줄 생태학적 혁명을 일으킬만한 여성의 잠재적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 1974년 프랑스작가 프랑수아 듀봉에 의해 고안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생태계적 혁명은 여성과 남성,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새로운 성관계(gender relation)수립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자유주의·급진주의·사회주의 여성운동은 모두 인간/자연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져 왔다. 그리고 각각의 운동 모두 방법은 달리하였지만 생태여성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4) 캐롤린 머천트, 앞의 책, 각주 4), 250-251면.

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환경악화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과정에서 여성과 환경사이에 맺어지는 모든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산업, 농업, 수자원제도와 같은 다양한 전문분야가 함께 고려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힘입어 전세계적으로 '여성,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15] 제3세계 여성들은 환경파괴적 개발에 저항하는 운동의 주요 행위자였으며, 이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시각을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Ⅱ. 환경문제와 여성주의

1. 여성 환경문제 접근의 지구적·지역적 관계

자본주의의 전지구화과정은 정치적으로 지구를 통합하는 과정이면서 또한 그러한 통합 때문에 긴장과 분할을 자초한다. 그리고 개별국가의 권력은 지구촌 질서 재편이나 지구촌 문제를 관리하는데 점차 애매한 위치에 있다. 새로운 세계정치의 장르가 일국차원의 권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재규정하고 권력이나 민주주의의 문제가 더 이상 국가수준의 권력이나 의사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지구적 수준의 문제가 된 것이다. 이제까지 국민국가 수준에서 다루어 온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 및 그 실천의 주체가 갖는 의미를 재평가하고 '탈 근대적이고 지구적인 수준'에서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6] 일상생활과 관련하여서는 사고는 세계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해야 한다는 세계화논리에 대해 운동의 수준에서는 사고는 지역적으로 하지만 행동은 세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만큼, 사회운동의 세계적 연대는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국제적인 역학관계는 '새로운 세계권력의 3분법', 즉 국제기구나 국제협약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정치권력(global political power), 국경 없는 경제구조 속에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업을 벌이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세계적인 자본권력(global economic power), 그리고 자생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생겨난 시민단체들이 자연스럽게 연대를 형성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지구시민사회권력(global civil society power)으로 형성되고 있다.[17]

---

15) 이진아, "'여성과 환경'문제의 시각과 운동방향",「여성과 사회」, 제7권, 1996.6, 26면.
16) 조은, "지구촌화, 세계시민사회 그리고 신사회운동",「한국사회과학」, 제19권 제2호, 1997.11,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151면.
17) 유재현, "지구환경에 대한 고려 및 세계시민으로서 한국NGO의 역할"「1997전국환경활동가워크샵자료집」, 한국불교환경교육원, 45면.

이는 전 시대의 사회질서를 전횡적으로 구성하던 자본의 논리, 국가의 논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특히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부드러운 쟁점'으로 불리는 환경, 지역, 인권, 여성 등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다층적인 초국가적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다.[18]

요즘 들어 전지구적인 것 대 지역적인 것이란 구도가 환경이나 개발담론에 널리 쓰이고 있다. 지배적인 담론에서 전지구적인 것이란 지배적인 지역들이 지역적·국가적 통제에서 벗어나 전지구적 통제를 획책하는 정치적 공간이다. 전지구적으로 뻗어나간 지역이 지리상의 확장과 민주주의의 확산을 나타내는 일종의 위계조직의 형태이며 낮은 단계의 지역적 위계는 어떤 식으로든 높은 전지구적 단계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그릇된 개념이 도출되고 있으며 가동 중인 비민주적 개발계획들도 이와 유사한 국가적 이익이라는 잘못된 개념에 근거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적인 이해는 더 큰 이해라고 여겨지는 것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 같은 것을 느끼도록 강요되고 있다[19]. 이처럼 국가권력과 타협하면서 초국가자본에 의해 유도된 세계화는 시공의 구체성과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적 풀뿌리운동들로부터 심각한 비난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결국 환경문제에서 'global'이라는 담론은 전지구적이라는 이름 아래 토착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토착민이 그들의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지구적 통제를 구하는 정치적 공간이어야 한다. 이는 보편적 이해나 전지구적 통제를 통한 특정 이해의 관철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전지구적 통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의 지구환경에 대한 토의와 협상은 세계은행 등 비토착민 중심의 중앙집권화의 경향을 띠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지역공동체보호에 기반한 의사결정권의 확대, 권한의 재제도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소한 지역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동의권과 정보공유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20]

지역화란 세계화를 일차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전체의 움직임으로 이해할 경우, 우리는 지역과 국민을 전 세계적으로 동질화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지역적 특수성이 새로이 부각되는 이질적인 과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로버트슨은 세계화와 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지역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지구지역화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지구지역화개념은 세계화논의의 한계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세계화가 오히려 새로운 지역화 내지는 재지역화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로버트슨의 지역지구화개념을 문화적 세계화와 연관시

18) 조은, 앞의 논문, 각주 16), 163면.
19)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손덕수·이난아(역), 『에코페미니즘』, 창작과 비평사, 2000, 21면.
20) 조은, 앞의 논문, 각주 16), 169면.

켜 볼 때 대중매체를 통한 문화적 상징과 의미의 세계가 재생산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적인 것들의 새로운 발견과 그 지역문화 간의 부단한 응집과 해체의 역동적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의 세계지역화는 여성문제에 있어서 더욱 유익한 토대를 제공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지역화가 전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을 결코 상호 배타적인 대립관계에서 파악하지 않고 각각 이질성과 동질성, 분화와 결속의 끊임없는 보완과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으로 구성해내고 있다는 사실은 우선적으로 여성들로 하여금 탈중심화, 탈식민지화, 탈가부장제로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주변부 국가들의 주변부 여성들로 치부되고 소외되던 많은 제3세계의 여성들이 스스로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문화에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권력의 해체현상은 여성들의 문화가 주체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마련하게 되며 여성들로 하여금 각각 구체적인 삶의 장, 지역화된 실천의 장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시키게끔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다.[21]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각각 지역적 특수성에 입각한 여성주체들의 상이성은 곧 여성환경운동의 다양한 잠재적 기능성들을 실현해 가는 거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으로부터 종속당한 존재의 모든 소리들과 그들의 저항의 진리에 귀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의 정치적, 개인적 실천의 문제점을 더 잘 인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 제기는 생태여성주의의 목적을 실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생태여성주의 또한 현 시대의 생태적 파괴와 가부장적 권력에 대항해 저항을 시도하는 필연적인 긴급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로부터 다른 용어와 다른 정치학이 출현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새로운 지역운동, 새로운 창조력 그리고 권력에 대항하는 새로운 연합 운동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22]

종국적으로 환경문제접근관련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지구적인 것/지역적인 것 사이의 역동성은 첫째, 지구적 환경주의의 북쪽 국가들의 이권 증대를 위한 패권적 담론과, 둘째, 남쪽 환경주의가 가지는 지구적 환경주의에 대한 저항운동과 연대 사이에서 일어난다. 전자를 성별문제에 대입하면 지구적 자본주의가 '보편적 자본주의'라고 특권을 주장할 때 가지는 자본의 성중립적 성격이 성별관계에서 억압적 힘을 휘두르게 된다.[23]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태여성주의 이론의 수용과 지역 주체성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여성간의 보편성과 차이의 문제를 축으로 하는 논의가 있다.[24] 결국 정책이란 특정한 기관들이 그것

21) 노성숙, "세계화와 여성", 「철학과 현실」, 제47호, 2000.12, 121-122면.
22) 아이린 다이아몬드·글로리아 페만 오렌스타인(엮음), 정현경·황혜숙(역), 『다시 꾸며보는 세상: 생태여성주의의 대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201면.
23) Noel Sturgeon, *Ecofeminist Natures*, N.Y.: Routledge, 1997 참조.

의 이행에 동의한 행동지침이다. 그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은 정책 작성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개발기관들은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개발정책에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야 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2. 여성주의관점에 입각한 환경문제 접근법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여성행위자로서 우리가 서있는 곳에서 행위자로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구 속에서 지역성을 고려해야 하며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서있어야 하는 것인가를 규명하기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했고 추구하도록 강요되었던 서구의 환경문제 대응의 발전적인 모습인 생태여성주의의 논의를 따라가 보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서구에서 여성과 환경관련논의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지, 현실운동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분석정리는 우리의 방향설정을 위한 전제 작업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을 둘러보면 이것들은 근대 이후 서구에서 형성된 서구제도의 유사품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서구가 풀어야 했던 물음과 그 해답을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찰은 서구가 겪은 시행착오를 피해가도록 도와주거나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해결방법을 발견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근대는 탄생 이후 세 번의 세기적 문제에 부닥쳤다. 그 첫 번째가 자유주의 탄생을 가져온 시민(부르조아지 계급, 젠틀맨층)들의 정치적 권리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사회주의의 탄생을 가져온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였고, 세 번째는 생태론의 탄생을 가져올 억압받아온 것들의 해방(여성의 권리, 자연의 권리 그리고 제3세계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25]

우리와 같이 이른바 제3세계로 불리거나 불렸던 국가들은 서구가 겪은 이 세 가지 문제들을 현재 그대로 겪고 있는데, 더욱 아이러니컬한 것은 문제해결의 방식 및 시행착오조차 서구와 흡사하다는 점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1992년 리우회의나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러한 여성의 권리와 자연의 권리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하려는 서구의 이론적인 시도들

24) 이영숙, "한국여성환경운동의 성별관계와 지구화논점들", 「여성학논집」, 제18권, 2001.12, 한국여성연구원, 122-123면.

25) 문순홍, "에코페미니즘과 여성정치세력화", 「대화」, 제3권, 1994.9, 51면.

과 이 시도가 분화되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의미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생태여성주의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1970년대 초반서구사회의 두 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26] 하나는 과학기술과 개발에 대한 회의로서, 산업주의에 대한 심층생태학적 비판, 경제적 제국주의에 대한 제3세계의 비판, 반핵운동이 일어났다.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적 여성주의가 좌절되었다는 인식이다. 동등한 교육과 경제력만 있다면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위치도 향상될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현실에서 1960년대의 신좌파남성들은 동료여성들을 비하하며 동등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주의자들은 새로운 출구를 여성만의 고유한 문화에서 찾으려하여 남성의 생산에 대항하는 여성의 재생산(생식), 모성, 양육적 기질을 강조하고, 이른바 여성원리를 내세우며,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하려고 시도하였다. 발 플럼우드(Val Plumwood)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은 무비판적 평등의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에 반동하여 무비판적 역전의 급진주의적 여성주의로 바뀐 것이다.[27] 이렇게 시작된 전통적인 여성주의에 대한 비판과 생태주의 연결은 급진적 생태여성주의를 태동시켰고, 그 후 사회주의적 생태여성주의 등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20세기 미국환경운동의 중요 인물인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은 1962년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라는 저서에서 살충제와 제초제의 피해를 심각하게 경고하였다. 이들이 직접적으로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표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여성들이 환경문제를 신속히 감지할 수 있으며,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자연뿐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들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생태여성주의의 선구자라 할 만 하다. 이처럼 생태여성주의는 여성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며, 많은 여성들이 이론(여성주의나 생태주의)에 대한 논의 이전에 자생적으로 생존을 위하여 환경운동, 반핵운동, 무차별적 개발착취에 대한 반대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론과 서적은 주로 서구에서 주로 많이 나왔지만, 그 근원이 되는 여성들의 환경운동은 전세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여성들의 실천적 환경운동은 파괴된 자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개발도상국들에서 활발하게 펼쳐져 왔다.[28] 특히 제3세계 여성들의 풀뿌리 환경운동은 환경문제와 여성차별문제가 결합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단순히 양성간의 타고난 생물학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라, 성별의 사회적·정치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즉 남성이 주도하는 경제 영역(원료 채취 및 생산)과 정치영역(과학

26) Mary Mellor, “Eco-Feminism and Eco-Socialism: Dilemmas of Essentialism and Materialism”, *CNS* 3/2, 1992, p. 46.
27) Val Plumwood, *Feminism and the Mastery of Nature*, N.Y.: Routledge, 1992, pp. 30-31.
28) 이귀우, “에코페미니즘”. 「여성연구논총」, 제13권, 1998.12, 서울여자대학교, 129면.

적 개발정책)에서 파생된 환경오염의 결과를 여성들이 몸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자연에 대한 폭력사이의 연관을 깨닫게 된 것이다.[29] 지구의 환경재앙 앞에서 남녀구별 없이 생태계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재, 환경논의에서 굳이 생태여성주의에 입각해야 하는지에 회의를 보일 수도 있지만, 아직도 남성이 주도하는 개발, 계속되는 세계화에 의한 자본주의 물결은 빈곤의 세계화를 초래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삶의 양식을 바꾸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전통적인 남성·여성, 자연·문명의 이항대립에 의문을 던지는 생태여성주의이론을 검토하는 것은 현재에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생태여성주의는 학자들의 이론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론은 효과적인 사회운동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며, 생태여성주의의 논지를 분명하게 발전시키는데 중요하다. 우리의 실정을 보면 여성환경운동은 활발하지만 생태여성주의 이론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여성의 환경운동은 쓰레기줄이기운동, 재활용운동, 합성세제안쓰기운동 등 상품순환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소비와 폐기과정에만 제한되고, 자연파괴의 원인이나 여성억압의 궁극적 원인에 대한 논의는 미약한 상태이다.[30] 그리고 생태여성주의가 동양사상(노장사상, 불교)이나 전통사상(동학, 원불교)과 통한다고 받아들여진 관계로 여성의 '영성'(spirituality)을 생태여성주의의 핵심개념이라고 주장하는 이해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해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31]

생태여성주의는 타자성의 테두리를 크게 넓혔다는 점에서 그 업적을 높이 살만하다. 여성의 벽을 뛰어넘어 그 관심을 자연으로 넓혔고, 더 나아가 권력이나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억압받는 모든 사회제도에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생태여성주의는 이제 여성 운동이나 문학비평의 좁은 테두리에 머물지 않고 사회 운동 쪽으로 그 방향을 돌렸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 모색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골이 깊어진 정치적 갈등, 경제적 불평등, 인간소외, 환경파괴 등 후기 산업사회의 여러 사회모순을 극복하는 데에 있어 아주 큰 의미를 지닌다. 종국적으로 환경문제접근에서 지역성과 행위성에 대한 여성주의관점의 실천적 논의들은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주의자들의 제안인 생태여성주의의 논의가 어떠한 지구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포괄하고 있는지 그 가능성과 방향과 한계를 탐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

29) 앞의 논문, 131면.
30) 문순홍, 앞의 논문, 각주 25), 90면.
31) 이귀우, 앞의 논문, 각주 28), 132면.

Ⅲ. 환경법질서에 대한 여성주의관점에서의 비판

인간은 생태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세계 또는 생물권 내에 살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주권국가 또는 그 구성요소가 되는 하부행정단위의 지배 하에 있다. 그러므로 환경문제도 원칙적으로는 국지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지만, 국제하천 및 호수의 오염, 대기오염, 해양오염, 방사선피해, 환경파괴무기, 농약 등에 관한 것은 국가간의 주요공통관심사로서 국제적 차원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술적·경제적 가능성문제로서 흔히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특정한 해결방법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환경문제의 해결과 같이 복잡하고 고도의 과학기술적인 지식과 방법을 요하는 분야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만족한 해결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기술적·경제적 가능성문제는 환경관리를 위한 법규정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법원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방법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기술적·경제적 가능성문제를 반드시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기관이 특정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규정을 입안함에 있어서 특수한 환경문제와 관련된 기술적·경제적 가능성 여부를 염두에 두고 있다.[32]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인 접근방법은 환경문제를 다루는 한 방법론에 불과하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합리적인 법적 규제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분야와 다른 특색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법이 문제로 삼는 것은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때 이러한 기준이 법적인 면에서는 물론 기술적 내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준수를 강행해도 무리가 없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환경기준에 대한 문제는 법집행의 절차적인 면만을 다루면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로서, 환경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만족한 해답을 주지 않으면 유효한 법규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법에 대한 연구는 과학기술과 이에 뒤따르는 경제문제의 현황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법의 일관성과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을 갖고 있다.[33] 그러나 논의는 여기서 그칠 수 없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법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억압문제나 이원론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런

32) 신현덕, "환경의 오염과 국제법", 「대한국제법학회논총」, 제25권 1-2호 합병호, 1980. 12, 145-160면.
33) 신현덕, "환경문제의 제도적 접근방법", 「환경법연구」, 제6권, 1984, 20-21면.

점에서 환경문제 대응에 있어 여성주의적 관점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강력히 대두된다.

지구화시대의 세계환경정치 속에서 환경문제해결의 국제규범틀이 남북갈등에서 시장경제의 논리를 통해 북부에 의해 부당하게 정당화 확대되고 있으며, 개발문제·인구문제에 대한 접근법, 국내환경법의 국제환경규범의 종속성 등이 국제환경법질서에서 환경착취를 암묵적으로 진행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는 국제환경법에 대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한다. 이어서 국내환경법상 쟁점들 중에서 두 가지, 토지이용과 환경보호구분에 내재된 이분론의 문제와 리스크관리체계법이란 측면에서 환경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 환경법이 전제하고 있는 위험평가의 문제를 검토한다. 국토이용과 환경보호를 구분된 개념으로 보아 합법적으로 환경보호를 배제한 국토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현행환경관련법제를 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여 분석 비판한다. 또한 환경관련법제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인 사전배려원칙의 현실적 허구성과 위험평가제의 구조의 문제성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환경법제의 접근에 있어서 생태여성주의적 접근이 전제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1. 국제환경법에 대한 비판

국제환경법에 대한 여성주의접근법은 비판법학의 특정 패러다임을 되풀이하여 가르친다. 국제환경법에 대한 여성주의접근법의 구축은 세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의 행위들에서 국가들을 위한 규범적 행위를 확인하고 확립함으로써 여성주의패러다임을 재고할 것을 필수요건으로 한다.[34] 여성주의적 관점의 국제법이론을 환경법과 연결시킬 때 여성주의국제법학자는 규범적이고 제도적인 법적 구조물이 성편견적이라는 것과 국제환경법에 대한 자유주의의 가치 접근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자유주의적 인식은 환경법의 주요문제를 드러내 보인다. 자유주의가 지지하고 있는 두개의 기반에 대해 특히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첫째는 권리의 일정 측면들이고 둘째는 '사적'국제법과 '공적'국제법의 구분이다.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고 하나, 전통적 가치에 입각한 담론은 여성이 인간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의 개념과 구조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 보편적 권리라는 인식은 고귀할 수 있으나 그것은 국제정치현실에서는 실용적이지

34) Christopher C. Joyner and George E. Little, "It's Not Nice to Fool Mother Nature: The Mystique pf Feminist Approaches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14 *B. U. Int'l L. J.* 223(Fall 1996), pp. 240-241.

못하다. 각국의 각기 다른 정부들은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지 않은 관습과 사회적 전통에 근거하여 다르게 취급한다. 이와 흡사하게 권력의 명백한 불평등은 사회 내에서 그리고 국가간에서 여성의 권리보호를 왜곡시킬 수 있다. 분명히 일정 권리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여성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권리들이 무엇에 대한 자유라기보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라는 용어로 주로 정의되어 온 문화에서 많은 개인들은 그들이 최종적으로 자격이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자원들을 결여하고 있다.

여성주의국제법이론은 이분법적 사고를 거부한다. 여성주의자들은 그러한 이분법이 성별 추론의 허구를 대표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여성주의자들은 두 요건 간에 갈등점을 그들이 공유한 특징들 위에 위치시킴으로써, 남성에게 그들 자신의 추론이 이분적 관계의 모든 성질들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고 있음을 확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성주의자들은 이분법을 가지고 더욱 논의하려고 한다. 또한 여성주의법이론은 비판적 방법을 제시한다. 여성주의자들은 현존하는 국제법질서의 구성요소들에 이의를 제기한다. 왜 국제환경법이 법적 가정들, 원리들, 용어를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묻는다. 여성주의자들은 국제법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지지하는 본질적인 성편견을 관찰하고 있다.

국제환경법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법은 해체주의적 방법론(deconstructionist methodology)을 형성하고 있다. 여성주의이론은 국제환경법의 규범적 기반들이 잠재적으로 성편향적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주의 법학논의들은 이러한 비판적 전제들로부터 재구축의 대책을 기술하는 것이 어려워 고전을 하고 있다. 국제법 특히 환경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제환경법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개념적 법적 성편견들(gender biases)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다. 국제환경법의 세가지 현저한 특징들은 여성주의비판의 주요 타겟으로 되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개념, 공사구별, '경성법'과 '연성법'간의 긴장 등 이다.[35]

정부에 의해 조직되고 관리되는 '국가'는 국제법상 분석의 기본단위를 형성하고 있다. '국가들'은 조약을 맺고, 관행적인 국제법에 따르고, 공적 국제조직의 성원이 된다. '국가의 동의'는 지구법의 기본적 지표이다. 여성주의자들은 정부와 정치의 리더쉽과 여성의 관여가 상당히 미미한 것에 대해 현재의 국제환경법의 지배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국제관계는 가부장적 영향의 산물이다. 국제사회에서 남성들은 권력을 잡고 국제영역 속에 권력의 위치를 놓는다. 남성들은 국가들과 국가들에 의해 창설된 국제조직을 통제한다. 전체로

35) 앞의 논문, p. 243.

서 여성은 국내 국제정치에서 권력의 수단에 거의 접근하지 못한다. 여성주의자들은 국제조직을 통상적인 국가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정부에 허용하기 위해 창설된 국가들의 기능적 연장으로 본다.[36] 몇몇 여성이 정부의 직무를 맡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 국제정치에서 남성들은 주요 행위자로 남아 있다. 여성주의 국제이론가들은 '국가의 주권'은 여성의 종속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본다. 국가는 남성에 의해 창설되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선호하여 남성에 의해 성립되었다.

자율적 행위자로서 '국가'의 남성적 개념은 성 불평등으로부터 여성의 소외를 강화시킨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남성은 성적 영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법학상 수단으로서 '국가 자율'을 정당화시켜 왔다. 남성들은 인간통제로부터 독립적·규범적으로 기능하는 행위자로서 객관화된'국가'를 강조할 수 있다. 현실에서 남성들은 '국가'행위 과정을 결정하고 지시한다. 남성적 주도로부터 독립된'국가'를 분리하는 것은 교묘히 국제법에서 성편견을 숨기고 있다. 결국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구축은 '다른 목소리'의 여성의 요구를 제한하고 있다.[37]

여성주의 이론가는 국제환경법에서 공적/사적구분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공사구분에 관한 여성주의관심은 자유주의이론의 핵심에서 나온다. 자유주의는 전통적으로 공적 남성적 영역을 여성의 대부분이 근거하고 있는 생활의 사적 영역보다 선호해왔다. 그 구분은 사적 세계는 통제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38] 국가상호간의 공적 쟁점들과 국내정치학의 사적 영역간의 간격을 확립할 때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고를 강화시킨다.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국제법도 공적 관심의 문제를 다루는 정도까지는 사적 여성적 세계를 지배하지 않는다. 또한 공적 권력을 통제하는 남성은 사적 세계를 지배한다. 요컨대 국제환경법상 공사구분은 여성을 종속시키고, 법, 사회, 환경관리에 대한 여성의 기여가치를 최소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한편, 국제환경법의 중요한 법원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성법(soft law)이라 불리는 유형의 규범이다, 국제기구의 권고, 결의 또는 선언 등과 같은 연성법은 오늘날 새로운 국제환경법의 연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규범들은 ICJ(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1)(c)항에 규정된 법의 연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식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연성법은 이들로부터 합의된 의무나 원칙들이 환경조약으로 전환

36) Hilary Charlesworth, Christine Chinkin and Shelly Wright(이후 Hilary Charlesworth로 약칭함), "Feminist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85 *Am. J. Int'l L.* 613, 622(1991).

37) J. Ann Tickner, *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Feminist Perspectives on Achieving Global Security,* 1992, pp. 42-43.

38) Hilary Charlesworth, 앞의 논문, 각주 36), p. 627.

되거나, 그 중 주된 원칙들이 개별국가의 국내법의 일부로 수용됨으로써 경성법(hard law)으로 바뀌기도 한다.[39]

만약 국제공동체가 성평등에서 진정한 진보를 이루려면, 경성법이 일반적으로 선호될 것이다. 경성법은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연성법과 관련하여 잘못된 희망을 키우지 않는다. 더구나 경성법규범과 연성법규범간의 이분법은 국제적 법적 가부장제의 한층 진전된 증거로서 여겨질 수 있다. 아마도 남성은 경성법규범 하에 놓인 연성법을 통해 강제력 없이도 여성의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남성지배적인 국제법체계는 경성국제법규범을 공표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연성법수단을 통해 성관련문제들을 교정하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경성·연성 구분은 자주 지구환경법에서 표면화된다. 예를 들면 1982년 세계자연헌장을 들 수 있다. 총회는 이 헌장을 결의의 형태로 채택했다. 총회에 의해 채택된 헌장은 기속력이 없다. 세계헌장은 인류는 자연의 부분이고 삶은 에너지와 영양소들의 공급을 확보하는 자연체계들의 연속적 기능들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표명하였고, 헌장의 권고는 국제적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과 현실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들은 자연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그리고 토양의 생산성을 보존함으로써 자연에 회복불가능한 손상을 야기시킬 것같은 행위들을 피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헌장은 국가가 취해야 할 특정 행위들의 골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특히 여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세계헌장의 권고가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총회가 순수한 생태적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서 또는 지구환경기준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효과적일 수 있는가? 여성주의관점에서 볼 때 세계헌장의 연성 권고들은 국제법에서 중요한 결함이 될 수도 있다.

2. 토지이용법제·환경규제법제구분논의에 대한 비판

토지이용·환경규제구분과 관련하여 여성문제를 궁지에 빠지게 하는 것은 사적소유권과 같은 중립적 요소가 그 구분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는지 여부 또는 그 구분이 일정 형태의 성 억압이나 성적 소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여성주의학자는 부분적으로 가부장제가 그 구분의 원인이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40]

---

39)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1, 11면.

40) Nancy Perkins Spyke, "the Land Use-Environmental Law Distinction: Geo-Feminist Critique," 13 *Duke Env. L. & Pol'y F.* 55, 80(Fall 2002).

여성주의전통은 서구문화가 여성과 자연 양자를 타자화하고 남성의 그들에 대한 의존을 부인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것은 남성-문화·여성-자연구분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은 강한 여성혐오라고 여긴다. 이 체계 안에서 남성은 지배되고 배제되는 여성과 자연 양자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모델 하에서 자연에 대한 초월과 지배는 환경문제를 여성주의관심사로 만든다.

이원론의 결과는 중요하다. 그 결과의 하나는 도구주의인데,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지배자의 억압된 것의 사용이다. 가장 극단적인 것으로 이원론적 도구주의는 지배적인 남성 이익은 여성을 부인과 아이양육자로 사용하고, 한편 자연은 남성적 요구에 응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원론의 또 다른 결과는 지배되는 이익을 상호호환가능한 것으로 여겨 다양성을 평가절하 하는 균질화이다. 여성은 거의 모두 비슷한 것으로 여겨진다. 어디에 위치했던 상관없이 물과 공기 모두 흡사한 방식으로 규제된다. 이원론의 세 번째 결과는 도덕적인 것이다. 이 경우 윤리는 지배자, 특히 백인 남성에 의해 표명되고 정의된다. 가장 단순화한 가정에서 지배자는 그에게 제한이 될 수 있는 열등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버린다. 다른 것들은 동정의 여지없이 자신의 필요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원론의 이러한 결과는 서구세계에 자연자원을 충분히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제적·과학적·기술적 전망을 남겨왔다. 대신에 자연의 가치와 다양성은 종종 초월적인 지배적 견해에 의해 무시된다. 20세기를 통해 유지되었던 고도의 인간과 자연의 분리는 아직도 산업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을 자연의 부분으로 보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 결과 그 분리는 지구와의 연속성부재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 부재로 나타난다.

생태여성주의는 더욱 세밀하게 여성주의와 환경문제를 연결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가부장제와 이원론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토지이용/환경규제구분은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것이 어디에 닿아있는가? 그러한 구분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식은 발전과 보전 간에 선을 긋는 것으로 여기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토지이용결정은 무엇을 어디에 세울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반면 환경상의 결정은 공기, 물, 토양을 깨끗하게 지키는 법을 결정한다. 토지이용결정을 통해 경관에 명령을 부과하려는 움직임(도로건설, 산업단지조성과 주거구획)은 남성적인 시도이다. 반면에 환경상의 주도-깨끗한 공기 규제 생물다양성보호-는 자연자원과 인간생존간의 관계를 인식하고자 하는 여성적 대응으로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면 그 구분은 남성을 여성(자연)에 대립되는 것으로 놓는다. 더욱이 토지이용결정은 통상적으로 흔히 남성지배적인 구획위원회(zoning boards)에 의해 만들어지는 반면, 환경상의 결정은 여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여성과 자연의 이익

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풀뿌리조직에 의해 계속해서 정보를 얻는다.

물론 토지이용·환경규제구분을 남성적·여성적 이분법으로 단순히 특징화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성문제는 구분에서의 편견을 벗기려고 한다. 그래서 문제는 남성·여성구분이 억압과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 문제로 된다. 구분에서의 편견이 토지이용·환경규제구분을 지지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토지사용통제의 가부장적 성질과 연결되어 지방토지사용결정에 부여된 타당성의 가정은 생태계건강에 대한 염려가 억압될 수 있다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그 위험이 현실이 되는 때는 언제나 토지사용결정(남성적 가치에 의해 추진되는)은 환경상의 노력을 통제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우리 환경법현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협의권을 도지사에게 위양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두는 특별법들이 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제정 1995.12.30, 법률 제5130호; 일부 개정 1999.1.21, 법률 제5654호) 제20조의 환경영향평가특례조항이었다.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특례조항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는데,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1995.12.29, 법률 제5089호; 일부 개정 1999.1.21, 법률 제5654호) 제9조와 제주도개발특별법(전문개정 2000.1.28, 법률 제6249호) 제13조가 도지사에게 환경영향평가협의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구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서의 특례를 인정하여[41], 결국 토지이용측면이 환경영향평가를 완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토지이용은 현실에서 환경규제 측면과 분리되어 고려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정책의 기조를 이루는 것과 맞물려 지방정부의 독자적이며 환경파괴적 이용이 촉진되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토지이용규제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적 측면이 도외시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관련연구결과는 남성정책결정자들이 그들 결정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입장이 된다면 위험을 승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42] 동시에 여성과 소수집단은 환경위험에 더욱 더 취약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위험관련경향들이 여성과 환경가치를 소홀히 하는 토지사용결정들로 이어지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상업상의 이익들을 앞세운 토지사용선택들이 여성과 소수인종들에게 초래할 환경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남성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취해질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끌리는 토지사용대안들이 성 억압과 소수인종억압의 위험을 초래할 것은 당연하다.

---

41) 홍준형, 앞의 책, 각주 39), 290면.

42) Robert R. M. Verchick, “In a Greener Voice: Feminist Theory and Environmental Justice”, 19 *Harv. Women's L. J.* 23, 80(Spring 1996).

또한 가장정치(patriarchy)는 재산권을 공동체권리와 경쟁시키는 토지사용-환경규제구분의 경향에서 명백하다. 토지사용방안들(devices)은 소유자들이 여러 방식으로 토지를 사용할 개인적 권리를 부여해 주고 있다. 반면에 환경규제는 거의 항상 재산권을 더욱 공동체적(communitarian)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재산권을 제한하고 제한을 부과한다. 법상 현재 재산권의 용인과 재산의 공동체적 인식을 선호하지 않은 것(disaffection)은 토지사용 및 개발과 관련된 남성적 가치들이 여성적 환경상의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들을 압도하는 것을 허용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토지사용/환경규제구분이 이원론을 감추는 다른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근린공원내의 개인소유토지상의 골프연습장설치와 관련한 사건[43]에서 대법원은 "관할행정청으로부터 도시공원법상의 근린공원내의 개인소유 토지상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인가처분을 받은 데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 바로 그 근린공원 인근 주민들에게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골프연습장건설의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환경권을 직접 소구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바 있다.[44] 그러나 환경은 어떠한 토지 위에 고정적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며, 넓게 주위 토지의 환경과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권이 토지소유권자 혹은 점유권자에게만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예컨대 하천에 대한 오염, 혹은 해수면의 오염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더라도 이것을 단순히 토지소유권 혹은 점유권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형태로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며,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도 마찬가지여서 이러한 환경에 대한 지배권능은 거기에 사는 지역주민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45] 그러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이러한 소유개념으로 해결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배개념을 넘는 인식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여성주의적 관점은 이러한 관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며 대안적 인식을 제시해 준다.

여성주의방법들의 적용이 토지사용-환경규제구분에 대한 여성주의비판이 가지는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한편 그 적용은 중요한 윤리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이원론의 윤리는 억압받는 관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지배적인 남성 이익의 윤리이다. 서구윤리모형은 지배적인 문화윤리가 직선적이며 동일한 중심을 가진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비판되어 왔다. 생태여성주의의 윤리는 자연의 중요성, 모든 생물간의 상호관련성과 힘없는 것에 대해 동정을 보일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존중, 책무, 조화의 원리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치에 근거한

43) 대판 94마2218결정, 공 95.7.1. 995.
44) 홍준형, 앞의 책, 각주 39), 45면.
45) 최상호,『환경권」』 형설출판사, 1998, 55면.

윤리적 대응인 것이다.

여성주의윤리비판은 기본적으로 배제되어 온 사람들로부터의 다양한 유입의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그리고 사고의 통합적이고 비계층구조적 체계를 채택함으로써 많은 방식으로 이원론을 언급하고 있다. 이원론을 배격하는 것은 다름에 대한 단순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연속성과 다름 양자의 복합적이고 상호작용하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이의제기는 계층구조의 창설 없이 다름을 허용하는 것이고 모든 생물들이 확대된 목적원인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인간들은 그 자신을 독특한 것으로 그러나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자연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자연자신의 힘에 의해 조화되어야 함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이원론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윤리적 흐름은 전통적으로 지배되어 온 사람들의 관점들에 대한 윤리적 관심을 배양할 것을 요구한다. 도덕적 선택들은 전통적인 남성의 자율적 이성적 행위자란 개념을 더욱 더 통합된 생태적 자아로 대체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양자에 대한 관심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환경윤리 규범인 다름을 무시하고 판에 박힌 공식상의 해결을 채택하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자아가 다양한 요구를 인식하고 자아에 제한을 부과할 것이다. 인간과 자연간의 상호작용의 협동, 균형, 상호성의 윤리가 될 것이다.

생태적 자아를 그리는 덕에 근거한 윤리적 체계는 이원론을 배격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 개념은 한때 인간정체성을 상실함 없이 특정성을 허용하는 것으로,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지역적이고 문맥화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초점은 전체적으로 추상적인 추론이 필요없는 것은 아니다. “이성의 서구의 구축으로부터 지배정체성을 배제하는 것은 이성 그 자체의 포기가 아니라, 다른 덜 계층구조적이며 더욱 민주적이고 다수적인 정체성을 그 자리에 놓으려는 노력을 요구한다.”

생태여성주의윤리모델은 이분법에 고유한 이원론에 대한 대응을 근거화지우는 것을 도와주면서, 의미 있는 방법으로 토지사용-환경규제구분을 비판하고 있다. 생태적 자아에 연결된 덕에 근거한 윤리는 구분의 존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문맥, 포함, 통합, 돌봄, 존중의 핵심 개념들은 자연자원에 영향을 가지는 일정 결정이 윤리적 차원을 가져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중요한 것은 윤리적 대응은 토지사용과 환경보호수단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토지사용결정들은 거기에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와 가치를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존중에 통합합시키는 문맥화된 통합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에 근거한 것이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

3. 위험평가(risk assessment)에 대한 비판

환경보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험평가는 여성주의이론의 관점으로부터 다름(difference)이란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일련의 관념설정(ideal setting)을 제공해 준다. 우리가 통상 리스크라고 할 때에는 위해물질(예컨대 석면과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위해(예컨대 사망, 부상 또는 손상된 삶의 질)의 크기, 즉 중대성과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함께 의미한다는 것이다.[46] 예를 들면, 미연방기관들은 환경상 직업상 안정기준들을 설정함에 있어서 독성물질들의 승인가능한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위험평가를 사용한다. 그래서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의 최소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은 오염시설의 위치설정, 국가우선순위에서 빠진 시설의 위치설정, 슈퍼펀드법상 크린업 기준들, 그러한 시설들이 크린업되는 속도를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전범위의 위생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흡사하게 고체폐기물, 살충제, 수질, 대기질을 규제하는 법률들은 기술에 근거한 환경상의 기준에 연결된 건강평가를 인간안전의 최소기준을 정의하는데 반영하고 있다.[47] 더욱이 미국환경청의 과학자문위원회(EPA's Science Advisory Board)는 국가의 환경상의 위협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방대응전략을 형성하기 위하여 위험비교분석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채택된 위험평가의 효율성에 대해 의심스럽다. 많은 위험평가 자료들이 조작가능하며 제휴목적이나 정치적 목적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해관계를 가진 행정기관에 의해 쉽게 사용될 수 있었다.[48] 그러한 사실인정에 적용된 승인가능한 기준은 종종 안전과 환경법사이에서 일치되지 않으며, 일정집단을 보호하는데만 기여하기도 한다. 더구나 많은 환경행정기관의 프로그램들은 잠재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또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에 일반화된 사실인정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49]

리스크문제의 핵심은 사회공동체 전체가, 그리고 이를 대표한 규제당국이 특별히 불확

---

46) Barry B. Furrow, “Governing Science: Public Risks and Private Remedies”, 131 *U.Pa. L.Rev.*1403, 1449(1983): Ellison Folk, “Public Participation in the Superfund Clean Up Process” 18 *Ecology L.Q.* 173, 187(1991).

47) Marriane Lavelle and Marcia A. Coyle, “Unequal Protection: The Radical Divide in Environmental Law”, in *Toxic Struggles*, pp. 584-585.

48) Donald T. Hornstein, “Reclaiming Environmental Law: A Normative Critique of Comparative Risk Analysis”, 92 *Colum.L.Rev.*, 562, 611(1992).

49) Samara F. Swanston, “Race, Gender, Age, and Disproportionate Impact: What can we do about the failure to the protect the most vulnerable?”, 21 *Fordham.L.J.* 578.

실한 리스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1997년 신설된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하고 있는데, 그 분석은 규제의 신설, 강화시 그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이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인데, 규제의 시행에 따라 피규제자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그 핵심적 요소로 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평가 규정은 환경법의 기본원리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전배려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동법은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하고 비용편익분석을 그 핵심요소로 도입하여 비용편익분석 결과 규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규제는 철회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규제영향분석의 핵심요소인 비용편익분석이 규제의 채택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50]

한편 사전배려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때 비용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배려의 원칙에 충실한 리스크대비책을 세운다면 비용의 다과를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리스크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또한 사전배려의 원칙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달리 명문의 근거가 없었는데, 1999년 법개정으로 인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비용편익분석은 신설 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대표적인 규제인 환경규제를 염두에 둔 것이거니와 실제로 모든 환경법의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각종 환경법은 특히 그 기술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한 하위 법령을 신설 강화할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정한 규제영향분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51]

어쨌든 합리적인 사전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대처하고자 하는 리스크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전배려의 원칙에 있어서도 리스크평가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사전 배려적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서는 '편익리스크평가'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적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리스크평가는 비용편익분석의 전단계로 파악하는 것이 정확하다. 사전배려의 원칙에도 리스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전배려의 원칙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시된 일종의 반성적 고려지만,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는 리스크평가가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52]

---

50) 조홍식, "리스크법: 리스크관리체계로서의 환경법", 「법학」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제43권 제4호, 2000.12, 71면.

51) 앞의 논문, 72면.

리스크평가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은 두 가지 점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위험평가를 위해 사용된 현재의 연구들은 다른 집단간에 환경상의 위협에 대한 취약성측면에서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위험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공동체의 인식과 공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53] 여성주의접근법은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평등에 대해 주위를 환기시키고 정치적 결정에 기여방식을 제공해 준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헌법상의 위험에 대응하지 않는다. 많은 과학자와 환경기관들이 알고 있듯이 일정 오염원으로부터 건강상의 위해를 겪을 가능성은 일정 집단에게는 더욱 크고 중요하다. 예를 들면 여성 특히 임산부, 소수인종(예를 들면 특히 일반 백인에 비해 작은 폐를 가지고 있는 흑인여성들), 극빈자, 어린, 노인들은 환경파괴에 더욱 취약하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있다. 소수집단과 극빈자집단은 과잉적으로 불균형하게 천식, 빈혈, 심장혈관 관련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체중미달의 아이를 더 출산하는 경향이 있다. 흡사하게 어린이와 노인들은 일정 수준으로 노출되어도 다른 집단보다 더욱 위험할 수 있다.[54] 대부분 환경관련행정기관들은 그러한 편차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방식으로 더욱 민감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환경청은 민감한 부분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을 들면서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평균 민감성을 가진 평균인에 대한 독성물질의 노출에 근거한 분석에 의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평균인은 임산부, 태아, 어린이, 소수집단의 더욱 민감한 단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실지로 이러한 평균인은 보통 남성, 백인 남성이다.[55]

부분집단에 대한 자료부족은 왜 환경행정기관이 현재 더욱 특정한 정보를 위험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지만, 장래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더 나아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두 가지 관련 이유를 살필 수 있다.

첫째, 주류환경운동은 항상 사회구성원들 중에서 결과된 손익을 동등하게 나누기 보다는 전체로서 환경악화를 줄이는데 더욱 관심을 보여 왔다.[56] 그래서 평균민감성에 근거된 규제체계는 더욱 취약한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게 더욱 부담을 지우는 한편, 전체로서 사회가 승인할 수 있는 정도로 오염의 총량을 줄이는 주류 환경주의의 주요 목표를 증진시킬 것이다.

---

52) 앞의 논문, 95면.
53) Robert R. M. Verchick, 앞의 논문, 각주 42), p. 14.
54) Samara F. Swanston, 앞의 논문, 각주 49), p. 589, p. 595.
55) 앞의 논문, pp. 589-591.
56) Luke W. Cole, “Empowerment as the Key t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Need for Environmental Poverty Law”, 19 *Ecology L. Q.* (1992), pp. 542-645.

둘째, 정책결정자들은 보호규정들이 근거하고 있는 평균민감성단계가 전혀 평균이 아니고 주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주로 남성들의 민감성에 근거된 단계이기 때문에 배분적 효과를 무시하는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규범적 또는 평균 수준 하에서 남성은 모든 것의 척도라는 여성주의적 인식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단 중에서 민감성의 편차에 대한 정보를 더욱 수집해야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선보호를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여성주의는 아울러 취약성을 주장할 때, 성에 근거한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 때때로 취약한 자들을 배제의 타겟, 비난의 타겟, 개인에 관계없는 일반적인 저화된 의학연구의 대상으로 만들어왔다는 것에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위험평가는 위험의 통계적 측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은 위험평가를 환경상의 기준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도구라고 여기고 있다.[57] 위험평가에 사용된 과학적 과정은 잠재적 위해라는 하나의 특징, 즉 위해발생의 객관적 확률에만 집중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통계적 위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 없는 대부분 가치판단을 고려하고 있는 위험평가자들은 모든 단계에서 가치판단을 떨어버리려고 한다.[58] 여성주의는 적어도 세 가지 단계에서 과학적인 위험평가의 이러한 모형에 이의를 제기한다.

첫째, 여성주의는 과학적 조사가 과학적 편견 또는 편향에서 자유로운 가치중립적이라는 추정을 의심스러워한다.[59] 실지로 많은 사람이 지적해왔듯이, 사람의 관점이 과학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다.[60] 서구 과학에는 생태여성주의 관점에서 차별, 지배와 착취의 순환이 관통하는 그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투입되어 있을 것이다.

둘째, 과학적 조사 그 자체가 가치중립적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조사에 근거된 아직 주관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다른 산물과 마찬가지로 환경규정은 불가피하게 주관성, 타협, 사익추구의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다. 규정의 기술관료적 용어는 정치적 사회적 고려를 제거한다기보다는 가리는데 봉사할 뿐이다.[61] 위험자료가 통계형태로 수집되고 배열된 후, 이러한 정보를 규정과 행위의 기준으로 종국적으로 변형시켜 만든 것은 다시 한번 가치판단을 반영하고 있다. 백만분의 1의 안전경계 또는 가장 최상인 전

57) Frank B. Cross, “The Surviving Significance of the Unitary Executive”, 27 *Hous. L. Rev.* 599, 887, 889(1990).
58) 앞의 논문, pp. 889-890.
59) Josephine Donovan, “Animal Rights and Feminist Theory”, in *Ecofeminism*, p. 167, pp. 174-175.
60) Frank B. Cross, 앞의 논문, 각주 57), p. 599, pp. 644-665; Laurence H. Tribe, “Policy Science: Analysis or Ideology”, 2 *Phil. & Pub. Aff.* 66, 76-77(1972).
61) Katharine T. Bartlett, “Feminist Legal Methods”, 103 *Harv. L. Rev.* 862(1990).

통적인 기술의 선호는 주기적인 회의석상의 논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경험과 판단을 과학적 정보에 적용하는 것으로부터 진전된 것이다. 누구의 경험인가? 누구의 판단인가? 어떤 정보인가? 이러한 것들은 여성주의가 촉구하는 의문이다.

셋째, 여성주의자는 사망과 질병에 관한 물음들이 가치중립성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결정들은 명백히 회의석상 논의로 모든 관련 정치적 도덕적 고려로 행해져야 한다.[62] 아울러 정책결정자들은 가능한 한 도덕적 쟁점들의 완성적 배열을 계발하기 위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의 모든 관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과학적 위험평가와 공공 가치에 대한 논의들은 규제기준을 세우는데 오직 가치중립적인 기준만을 적용하려는 전문가들과 심리적 인식과 맥락적 요소들 또한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공적 대중간의 주도권싸움으로 종종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은 이러한 논의는 양쪽 견해가 허용하는 것 보다 더욱 더 풍부하고 복잡하다고 지적한다. 여성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치중립적 인식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전문가들과 공중간의 논의는 과학과 느낌간의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각 집단이 의존하고 있는 일련의 방식, 가치, 태도들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인 것이다. 더욱이 여성주의자들에게는 이러한 논의에 대한 당사자들은 두개의 범주 그 이상으로 나누어진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세계관은 개인적 경험을 포함하여 많은 것에 근거하고 때문에, 각 범주 내의 부분집단들이 다른 부분집단들과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를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주의자들은 과학적 위험평가와 공적 가치들에 관한 견해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예상하고 있다.

확실히 과학자들 중 일부는 핵폐기물,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의 위험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합리적인 방식에 대한 과학자들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인과 정치적 견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63] 흡사하게 공공 대중 구성원들은 광범위하게 다양한 집단이다. 핵심에 있어서 비과학적인 이유들로 환경상의 기준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정치가들, 토지개발업자들, 육체노동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태도들과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위험평가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위험인식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도들과 정체성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여성주의적 인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62) 앞의 논문, p.862.
63) Frank B. Cross, 앞의 논문, 각주 57), p. 890.

Ⅳ. 지역성을 반영한 생태여성주의에 입각한 환경법질서의 모색

생태학은 모든 생명체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결성에 관한 학문이다. 생태학자들은 환경변화의 결과를 목격함에 따라 사회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연세계는 자원으로 생각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뒷받쳐 주는 삶에 대한 고려 없이 착취당해 온 것이다. 사회생태학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생명유지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몰두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생태여성주의의 개념이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의 많은 요소로부터 출현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여성과 자연은 역사를 통해 오랫동안 서로 연관되어 왔다. 여성주의자들이 사회가 어찌하여 여성에게 기껏해야 이등시민 정도의 지위만을 부여했는가의 문제에 몰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태학자들은 지구를 약탈하도록 허용했던 사회적 구조들, 인간의 성향 그리고 합리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시작하였다. 현재에는 두 학파의 사고가 같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물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학자들의 관점이 지적인 과학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주의자들은 경험론적 학풍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고, 지적인 틀을 다만 여성의 종속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추구할 뿐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생태학은 인간·환경과의 관계성 속에서 타자 곧 지구에 대해 말하고 있고, 여성주의자들은 여성·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타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생태여성주의는 이러한 두 가지 본질적인 타자에 대해 말함으로써 저항과 변혁의 방법뿐 아니라 모든 지배의 공통 뿌리를 이해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생태여성주의자들의 과제는 가능한 행동들의 결과를 고려하고, 우리가 서로 서로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타자의 입장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북쪽과 남쪽의 일부 환경운동단체들은 생산과 정책결정에서 탈중앙집중주의 유형을 추구하는 생태지역주의를 제안한다. 생태지역주의자들은 운반비용을 줄이고 교역을 최소화할 지역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지역생산과 지역소비를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일련의 다른 문제들과, 그리고 단일 민족국가들과 전지구적 경제체계 내에서 인식되는 한 개념을 제기하고 있다.[64]

생태지역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상은 권력을 분산시켜 사회의 조직형태를 자치적으로 개

64) 로지 브라이도티 외, 한국여성NGO위원회여성환경분과(역),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나라사랑, 1995, 224-225면.

선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지역주의는 근본적으로 인간과 자연공동체를 재건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독특한 지역문화와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 결부된 정체성을 강조하는 생태지역주의는 생태여성주의의 철학이 실천적인 사회운동의 일부로서 전환될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틀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지적은 고려해 볼만하다.[65] 우리의 타고난 기질에 자연적인 상황을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우리 자신을 적응시키는, 즉 한 장소의 원주민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생태지역주의는 생태여성주의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공통기반을 마련해 준다. 그러나 생태지역주의는 우리에게 실천할 과제를 주고 생태여성주의와 함께 현장(praxis)을 제공한다. 우리가 인간 상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구와의 관계를 변화시켜 감에 따라 과정의 일부로서 여성과 자연, 아니 사실상 인간과 자연은 새로운 형상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형상은 생태계를 연구하여 얻은 교훈과 여성주의를 통한 이해와 또한 생태지역주의의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을 반영할 것이다.

요컨대 여성이 환경회복을 위해 필요한 값싼 노동력 정도로만 간주되는 환경계획은 거부되어야 하며, 환경계획수립 이전에 지역수준에서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연사용은 흔히 지역의 권력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자연사용을 둘러싼 지역의 갈등은 민주적 과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이때 다른 배경(인종, 민족 등)에서 연유한 이해 및 요구에 대한 성찰 없이 단순히 남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권력의 탈중심화와 인간과 자연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사회조직을 자치형태로 변화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는 생태지역주의는 지역지구화 시대에 유용한 개념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평등사회에 대한 희망과 열정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해 깨달은 지식을 우리의 남성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종국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환경법질서는 지역성을 반영한 생태여성주의에 입각한 질서이며, 이러한 환경법질서 속의 평등 사회란 여성과 남성 모두가 적응의 과정에 참여하여 마침내 건강한 생태체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V. 맺음말

생태여성주의는 복합문화적 여성주의나 전지구적 여성주의와 마찬가지로 모든 형태의 인간 억압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들을 보여주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한 비인간

65) 아이린 다이아몬드· 글로리아 페만 오렌스타인(엮음), 앞의 책, 각주), 240-248면 참조.

세계인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간들의 시도에도 초점을 맞춘다. 여성들은 지금까지 문화적으로 자연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여성주의적 주제들과 생태학적 주제들 사이에 개념적, 상징적, 언어적 연관성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워렌(Karen J. Warren)에 의하면 서구 세계의 기본적 신념들, 가치들, 태도들, 그리고 서구 세계 자체와 서구 세계 주민들에 대한 가설들을 형성해온 것은 억압적인 가부장제의 개념틀이며 그 틀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지배와 종속의 관계,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관계를 설명하고 합법화하며 또 그 관계들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다.[66]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관점에 서서 국내 환경법의 법적 장치들의 전제와 국제환경법질서가 억압적인 가부장제틀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생태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였다.

급진적 문화여성주의자들과 급진적 자유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 여성을 출산이나 육아와 연결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여성에게 힘의 원천인지 아니면 무력화의 원천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 생태여성주의자, 자연 생태주의자, 또는 정신생물학적 여성주의자들은 여성과 자연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를 놓고서 사회구성주의적 생태여성주의자 또는 사회 생태여성주의자들과 견해를 달리한다. 그러나 생태여성주의자들은 환경에 대한 우리의 특별한 책임, 동물에 대한 책임,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종종 서로 다른 견해를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성해방과 자연해방이 공동작업이라는 루더(Rosemary Radford Ruether)의 생각에 모두 동의한다.[67]

그러나 대부분의 생태여성주의 저자들은 여성예속의 사회 역사적 발전의 궁극적인 결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대개 그들은 자연과정과 여성의 특별한 친화성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이는 이원론과 본질주의가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예외적으로 비엘과 헬러와 같은 생태여성주의자들은 그들의 이론적 연구를 사회생태주의에서 끌어온다. 이것이 심층생태주의와 생태여성주의 사이의 논쟁에 제기하는 문제제기 중의 하나이다.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심층생태주의자들이 남성중심주의를 직시하지 못하고 따라서 충분히 근본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생태여성주의자들도 단순히 위계를 역전시켰을 뿐이다. 주로 문화 여성주의(자연 여성주의)가 여성지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지만, 다른 생태여성주의 운동 흐름 역시 이원론과 위계질서를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들은 가부장적 지배 전략과 싸워오면서 동시에 그러한 전략

66) Karen J. Warren, “Feminism and the Environment: An Overview of the Isuues”, *APA Newsletter on Feminism and Philosophy* 90, no. 3(fall) 참조.

67) Rosemary Radford Ruether, *New Woman/New Earth: Sexist Ideologies and Human Liberation,* N.Y.: Seabury, 1975 참조.

을 자신에게 내면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변화의 힘이 있는 정치를 구조한다는 조심스러운 과정과, 지배구조를 재생산하는 현재의 지식체계를 허무는 일을 요구한다. 플럼우드와 워렌은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여성주의와 생태운동 모두가 이 이원론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지배의 논리배후에 깔린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물론 이러한 구분을 할 수 없다거나,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는 이러한 구분이 강자의 강제된 틀을 강화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바로 생태여성주의 관점에서 환경법질서의 기반에 대해 비판하고 새로운 환경법질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인 것이다. 생태환경주의가 고무하는 환경사상은 인간의 행위, 윤리, 지식에 대한 겸손한 시각에서 나온다.[68] 맥락주의적, 다원적이고, 포괄적, 전체주의적 사고를 고무한다. 그것은 추상적, 보편적인 윤리적 단언을 피한다는 의미에서 맥락주의적이다. 추상화과정은 인간과 자연 안에 있는 풍부한 다양성의 인식을 방해한다. 보편으로의 추상화과정은 지배집단의 특징을 포착해, 그것을 윤리적, 철학적 이념으로 전환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생태주의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다원주의적이고 포괄적이다. 아마도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주요 특징은 존재, 사고, 행위의 단 한 가지 올바른 방식이 있다는 믿음이다. 위계와 지배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철학이라면 다양성을 찬미하고 환경이론의 한 가지 정답을 확립하려는 시도를 억제해야 한다. 생태여성주의에 대한 비판들 중 상당수는 생태여성주의가 보편적, 추상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하지만 보편적, 추상적 답변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생태여성주의자들이 문제로 삼았던 부분이다. 또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생태여성주의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사회생태주의와 생태여성주의는 환경윤리와 환경철학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더 이상 사회적 지배와 통제에 대한 논의 없이 환경윤리와 환경철학을 다루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지구화 흐름 속에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성인지적 관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생태여성주의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생태여성주의적 관점 확립에서 지구화의 구조와 조건변화가 인식되어야 여성행위자의 행위방침이 올바르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지역성을 반영한 생태여성주의의 가능성은 행위자로서의 역할과 정체성확립에 있어서 대전제가 되는 논의로서 앞으로의 연구는 생태여성주의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관한 논의들이 지구화 흐름의 조건변화에 대응한 수렴가능한 부분에 대한 이론적 모색을

68) Jeseph R. DesJardins, 김명식(역), 『환경윤리(*Environmental Ethics: An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Philosophy*)』, 자작나무, 1999, 406면.

통해, 우리의 상황에서 생태여성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에 대한 논의 그리고 지역현장과 세계를 연결하는 여성환경연대에 관한 이론을 정립 구축함과 동시에 그것이 국내·국제환경법질서에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가를 탐구해야 한다.

주제어 : 생태여성주의, 환경법질서, 위험평가, 토지이용·환경규제구분, 여성주의법학방법론

【참 고 문 헌】

노성숙, “세계화와 여성”, 『철학과 현실』, 제47호, 2000.12.

문순홍, “에코페미니즘과 여성 정치세력화, 『대화』, 제3권, 1994.9.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4.

신현덕, “환경의 오염과 국제법”, 『대한국제법학회논총』, 제25권, 1-2호 합병호, 1980.12.

신현덕, “환경문제의 제도적 접근방법”, 『환경법연구』, 제6권, 1984.

안정선, “지속가능한 사회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일 고찰”, 『공주문화대학논문집』, 제26호, 1999.10.

여성환경연대,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21세기의 여성과 환경』, 박영률출판사, 2001.

이귀우, “에코페미니즘”, 『서울여대여성연구논총』 제13권, 서울여자대학교, 1998.12.

이영숙, “한국여성환경운동의 성별관계와 지구화 논점들”, 『여성학논집』, 제18권, 한국여성연구원, 2001.12.

이진아, “‘여성과 환경’ 문제의 시각과 운동방향”, 『여성과 사회』 제7권, 1996.6.

조 은, “지구촌화, 세계시민사회 그리고 신사회운동”, 『한국사회과학』 제19권 제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7.11.

조홍식, “리스크법: 리스크관리체계로서의 환경법”, 『법학』,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제43권 제4호, 2000.12.

최병두, 『환경사회이론과 국제환경문제』, 한울, 1995.

최상호, 『환경권』, 형설출판사, 1998.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1.

J.R. 데자르뎅, 김명식(역), 『환경윤리(Environmental Ethics: An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Philosophy)』, 자작나무, 1999.

로빈 애트필트, 구승희(역), 『환경윤리학의 제 문제』, 따님, 1991.

로지 브라이도티 외, 한국여성NGO위원회여성환경분과(역),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나라사랑, 1995.

마이클 레드클리프트, 강현수·이상헌·장윤희(역), 『발전과 환경위기: 새로운 환경이념의 모색』, 한울, 1993.

마이클 레드클리프트·테드 벤튼(편), 이기홍 외(역), 『지구환경과 사회이론』, 한울 아카데미, 1997.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손덕수·이난아(역), 『에코페미니즘』, 창작과 비평사, 2000.

아이린 다이아몬드·글로리아 페만 오렌스타인(엮음), 정현경·황혜숙(역), 『다시 꾸며보는 세상: 생태여성주의의 대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캐롤린 머천트, 허남혁(역), 『래디컬에콜로지(Radical Ecology)』, 이후, 2001.

Bartlett, Katharine T., "Feminist Legal Methods", 103 Harv. L. Rev. 862(1990).

Biehl, Janet, Rethinking Ecofeminist Politics, Boston: South End Press, 1991.

Charlesworth, Hilary, Christine Chinkin and Shelley Wright, "Feminist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85 Am. J. Int'l L. 613(1991).

Cole, Luke W., "Empowerment as the Key to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Need for Environmental Poverty Law", 19 Ecology L. Q.(1992), 542-645.

Cross, Frank B., "The Surviving Significance of the Unitary Executive", 27 Hous. L. Rev. 599, 644-665(1990).

Donovan, Josephine, "Animal Rights and Feminist Theory", Ecofeminism.

Folk, Ellison, "Public Participation in the Superfund Cleanup Process", 18 Ecology L.Q. 173, 187(1991O).

Furrow, Barry R., "Governing Science: Public Risks and Private Remedies", 131 U.Pa.L.Rev. 1403, 1449(1983).

Global 2000, Report to the President, Harmondsworth: Penguin, 1982.

Hornstein, Donald T., "Reclaiming Environmental Law: A Normative Critique of Comparative Risk Analysis", 92 Colum. L. Rev. 562, 611(1992).

Joyner, Christopher C. & George E. Little, "It's not Nice to Fool Mother Nature! The Mystique of Feminist Approaches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14 B.U.Int'l L.J. 223(Fall, 1996).

Lavelle, Marrianne & Marcia A. Coyle, "Unequal Protection: The Radical Divide in Environmental Law", in Toxic Struggles, pp. 584-585.

Mellor, Mary, "Eco-Feminism and Eco-Socialism: Dilemmas of Essentialism and Materialism", CNS 3/2, 1992.

Plumwood, Val, Feminism and the Mastery of Nature, N.Y.: Routledge, 1992.

Ruether, Rosemary Radford, New Woman/New Earth: Sexist Ideologies and Human Liberation, New York : Seabury, 1975.

Spyke, Nancy Perkins, “The Land Use-Environmental Law Distinction: Geo-Feminist Critique”, 13 Duke Env L & Pol'y F 55, 80(fall, 2002).

Swanston, Samara F., “Race, Gender, Age, and Disproportionate Impact: What Can We Do about the Failure to the Protect the Most Vulnerable?”, 21 Fordham Urb.L.J. pp.578-578.

Tickner, J. Ann, 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Feminist Perspectives on Achieving Global Security, 1992.

Tribe, Laurence H., “Policy Science: Analysis or Ideology?”, 2 Phil. & Pub. Aff. 66, 76-77(1972).

Verchick, Robert R. M. “In a Greener Voice: Feminist Theory and Environmental Justice”, 19 Harv. Women's L. J. 23-88(spring, 1996).

Warren, Karen J.(ed), Ecological Feminism, New York : Routledge, 1994.

【Abstract】

Ecofeminism and Environmental Legal Order

Seok, In Sun

As the twenty-first century is approaching, an environmental policy is being challenged as never before. The development proces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poverty, to an increase in economic and gender inequalities, and to the degradation of the environment which further diminishes the means of livelihood of poor people, particularly women. The recognition of the limits of nature to absorb into the development agenda has fuelled the search for sustainable solutions to the crisis. In women's attempts to conceptualiz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cognition of the connections between the domination of nature and women provided important insights. In the South, this recognition has stimulated the debate on women,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ithin the development context while in the North, it has given rise to nature feminism and ecofeminism.

While in the past, the emphasis was on women as victims of the environmental crisis, the women's roles have been shifted to efficient environmental managers within the development process in the South. The preparatory process that led up to the 1992 Earth Summit in Rio de Janeiro marked a new momentum in the women,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ovement, and it also influenced the alternative developmental,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movements and debates at large. Many women recognized that such a consensus of women globally was most urgent in view of the crisis which threatens the survival of all human beings. I think that these questions need to be raised if we, as women, are to influence the direction for which the dominant development model is heading.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environmental legal order from the ecofeministic point of view.

As to the structure of the article, in Chapter Ⅰ, I provi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nature of the crisis in environmental issues, development, and the interconnections between the themes of feminism and women in the third world.

In Chapter Ⅱ, I explore approaches to women's and environmental issue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In addition, I discuss a role for women and offer a new evaluation of the globalization/glocalization relation in the approach of woman environmental issues. I analyze ecofeminism in terms of proposals for epistemological changes and a re-evaluation of the human/nature relation.

In Chapter Ⅲ, I examine to criticize the environmental legal order from the ecofeministic point of view. I critically analyze feminist approaches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e land use-environmental law distinction and risk assessment.

In Chapter Ⅳ, I explore the environmental legal order founded on ecofeminism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e conclusion, I suggest a new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legal order from the ecofeministic point of view.

Key Words : ecofeminism, environmental legal order, risk assessment, land use/environmental regulation distinction, feminist legal methods